

커뮤니카학원의 반환규정은 재단법인 일본어교육진흥협회 유지회원협의회가 제정한 『*일본어교육기관의 유학생 수용에 관한 지침』에 준하며,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.

※『일본어교육기관의 취학생·유학생 수용에 관한 지침』URL

·한국어 URL : <http://www.nisshinkyo.org/j79.pdf>

입국사증을 발급받은 후 입학한 학생이 중도 퇴학한 경우

→출원선고료와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 학비 등은 하기 조건에 따라 반환한다. 단, 학비 등의 반환에 적용되는 단위는 각 학기*로 정하며 납입된 학비 중 퇴학 수속 수리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학비 등을 반환한다. 재학중인 학기에 관한 학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. 각 학기의 마지막 날을 각 기일로 정한다.

* 커뮤니카학원에서는 1년간의 수업을 4 학기로 구분하며 각 학기에 해당하는 수업 시간수는 180 시간이다. 1 학기의 수업일은 45 일이다. 각 년도의 실질적인 수업일수는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참조할 것.

<퇴학 수속 수리 조건>

·대학, 대학원 진학으로 인해 중도 퇴학하는 경우

→진학처에서 발행된 입학허가서 복사본(원본제시) 및 퇴학 원서 제출, 학생증 반납, 이상으로 퇴학 수속이 수리된다.

·진학 이외의 재류자격 변경으로 인해 중도 퇴학하는 경우

→재류자격 변경에 관해 본교에 사전 신고, 재류자격 변경에 충족하는 서류(고용개시일이 명기된 고용증명서·입적일을 알 수 있는 주민표 등)의 복사본(원본제시),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신청수리인(印) 복사본(원본제시) 및 퇴학 원서 제출, 학생증 반납, 이상으로 퇴학 수속이 수리된다.

·출국(귀국)으로 인해 중도 퇴학하는 경우

→출국(귀국)편 티켓 복사본(원본제시) 및 퇴학 원서 제출, 학생증 반납, 이상으로 퇴학 수속이 수리된다.

〈반환 시기와 조건〉

·대학, 대학원 진학으로 인해 중도 퇴학하는 경우

→조건 : 진학처의 재학증명서가 발행되어 있을 것.

시기 : 본교에서 재학증명서를 확인한 일자의 익월 말

·진학 이외의 재류자격 변경으로 인해 중도 퇴학하는 경우

→조건 : 해당 활동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으로의 재류자격 변경 증인(證印)을 받은 상태일 것.

시기 : 본교에서 재류자격 변경 증인을 확인한 일자의 익월 말

·출국(귀국)으로 인해 중도 퇴학하는 경우

→ 조건 : 여권의 출국 도장 및 목적지의 입국 도장의 확인이 가능할 것.

시기 : 본교에서 여권의 일본 출국 도장 및 다음 목적지 입국 도장을 확인한 일자의 익월 말

또한, 실제 반환시 은행 입금 등으로 인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므로 양해 바랍니다.